

제434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9일(수)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0)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2)
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0)
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2)
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5)
7.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북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6)
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1)
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4)
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3)
1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5)
1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5)
1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4)
1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7)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16.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603)

17.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5)
18.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077)
1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36)
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3)
2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03)
2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1)
23.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0)

상정된 안건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3
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0) 3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2) 3
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0) 3
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2) 3
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5) 3
7.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13026) 3
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1) 3
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4)
..... 3
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3) 3
1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25) 3
1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5) 3
1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4) 4

1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7)	4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	7
16.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3)	8
17. 폐철도 및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5)	8
18.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7)	16
1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6)	16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복기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23건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0)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2)
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0)
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2)
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5)
7.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6)
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1)
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4)
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3)
1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5)
1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5)

1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4)

1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7)

○**소위원장 복기왕**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비롯한 총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이 돼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지금 별지로 나눠 드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의 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관련해서 제정안의 취지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점을 고려해서 대안의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서 이용활성화라는 문구를 안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지원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이용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및 이 법에서 정한 교통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은 동 조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 법령 준수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대로 두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여사업자의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제공 의무조항이 있었는데 이걸 재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 미만의 자 또는 교육이수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대여한 경우에 등록취소, 사업정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나이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교육이수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의무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바꾸면서 행정처분의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동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관련해서는 원래 의결했던 대안에서는 임차인의 나이와 본인 여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교육이수가 재량으로 바뀌면서 교육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삭제하고 운전면허 보유 여부 확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보유 여부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다른 조항들의 경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 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확인과 관련하여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고 과태료 조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 여부 미확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던 것을 나이 및 본인 여부, 운전면허 보유 미확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국토부2차관 홍지선입니다.

지난 소위 논의에서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법 준수 의무 규정을 삭제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여전히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법률 자문 결과 도로교통법 준수 의무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 확인과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토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를 확인한다면 별도의 교육 이수 여부는 확인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에 대한 업계와 경찰청과의 논의 후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는 이용자 감소 등의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었고요. 경찰청은 현재 무면허 단속 중이고 면허 확인 소홀 시에 무면허방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를 하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지만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지금 이 자리는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그리고 윤재옥 위원님, 임태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김희정 위원님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 손명수 위원님 이렇게 함께 회의에 임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부 측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명수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소위에서도 몇 번이나 논의를 했는데 이 법의 도입·제정 취지는 지금 도로에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주차하고 버리고 그렇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이 법 제정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일부 이용자들이 두 명씩 탄다든가 그리고 너무 과속을 해서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속도를 20km/h로 제한을 하고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이런 취지로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을 보면 활성화를 안전·관리 계획으로 바꾸고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면허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이 조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체계가 운전면허의 부여와 확인, 단속 모든 것은 경찰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법은 도로교통법입니다. 그런 취지로 보면 당연히 이것은, 그리고 이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법에서 면허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심지어는 국토부에 자격확인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 측도 의견을 주셨지만 실제로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허 여부를 대여사업자가 확인을 하게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미 6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급격하게 축소시키는, 제한하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안전을 강화하자 그리고 관리를 강화하자 이 두 가지 측면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용자 그리고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좀 더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충분히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몇 달 더 후에 제정하더라도 오히려 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손명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안전도 중요한데 이게 말하자면 사실 편의 때문에 생긴 교통수단인데 그 편의 자체를 억눌러 버릴 만큼 과한 점점이라든지 규제가 있으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차관님에게 물어볼게요. 이른바 면허를 확인하고 그것을 대여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면 면허증을 무슨 단말기에 찍어서 그게 되면 빌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기존에 회원등록을 할 때, 가입을 할 때 본인의 신분증, 면허증, 카드 등록 그런 것을 다 할 때 면허 확인을 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처음에 본인 이 회원등록 가입을 할 때.

○배준영 위원 그러면 등록을 할 때 딱 한 번만 하면 되고 사용할 때마다 이것 확인하고 이런 것은 아닌 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최초에 가입을 할 때 본인 확인을 해 갖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면허증 확인은 스킵을 해도 회원가입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교통수단을 탈 때마다 면허를 확인하는 건 아니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그렇지만 현재도 도로교통법에 경찰이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무면허일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인데 자동차 운전도 자동차 운전을 시작할 때마다 옆에서 경찰이 있으면서 면허증을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맞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도 마찬가지로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두 분 위원님의 걱정, 의견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안전 중심으로 법안이 짜여져야 된다는 주장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 무게를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수개월간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간극의 차

이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이 부분을 상반기 중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시다만 계속해서 안을 내놓고 안을 내놓고 해도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청회까지 처리했던 것이라 다소 부담스럽기는 합시다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10시17분)

○소위원장 복기왕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일독했었지요?

○전문위원 오세일 예, 일독했었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일독했었으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부 측에 처리를 더 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고 정부 측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소위 자료 1쪽을 보시면 지난 소위에서 주선사업회, 화물연대, 공정위 등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이견 해소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 4쪽에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개인중대형화물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 공정위에서 제기한 의견을 각각 표로 정리를 하였고요. 지금 옆에 반영 여부에 보면 대부분 사항이 반영이 되었고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우측의 반영 여부에 보시면 대부분 반영이 되었고 화물연대 주장 중에서 이용회원이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에 화주 운임을 의무화해서 화주 운임을 공개하자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 반발로 법제화 지연이 우려되고 화주 운임 공개하는 것은 주선사나 운송사의 화물 등록을 감소시켜서 플랫폼 이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주선사업자로부터 받은 물량을 등록시킬 때 화주 운임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국토부 의견을 반영해서 동 내용은 넣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5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중에서 요금 신고제가 시장자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택시나 화물운송사업, 화물운송가맹사업에서도 요금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 결정에 대한 정부의 강제 개입이 아닌 사업 관리·감독을 위한 장치이므로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위해 요금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요금 신고제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난번 계류 법안에 대해서 김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24일 날 간담회를 통해서 조선업계에 수정안을 재설명하였고 조선업에 대해서 동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일부 의견을 수용하였지만 저희가 요금 신고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화물연대는 공동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찬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지난번에 김희정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여쭙보셨고 그것에 대한 답을, 자료 준비를 못 하셔서 오늘까지 넘어온 것인데 위원님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3)

17.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5)
(10시21분)

○소위원장 복기왕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의사일정 제17항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일독을 했었지요?

○전문위원 오세일 예.

○소위원장 복기왕 그리고 정부 측에 대안을 더 만들어 와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 대안이 지금 넘어왔나요?

○전문위원 오세일 지금 폐철도부지 관련 법안 비교표라는 별지 자료로 깔려 있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이 부분은 대안을 정부 측에서 발의 의원실과 협의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차관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차관님 말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국토부2차관 홍지선입니다.

지난 소위의 논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소위 당시에 차기 소위에서 대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해서 서 법안 발의 의원님, 송기현·민홍철·김석기 의원실과 전문위원의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석기 의원실에서 철도공사 소유의 폐역사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우리 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소위 당일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하였습니다. 자세한 대안 그리고 논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로 철도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 김태병입니다.

먼저 송기현 의원실과 전문위원 협의를 거친 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철도부지에 교량 하부와 지하선로 상부를 포함하고 철도 유희부지로 변경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총칙에 양 의원실 안을 반영해서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양 의원안과 동일하게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활용사업계획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한 계획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승인하는 절차로 규정하였고 사업시행자 지정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보칙에 양 의원안을 반영하여 재정 지원, 자료제공 요청, 업무위탁 등 규정을 신설하였고 국유재산 특례로는 사용기간은 송기현 의원님 안의 20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영구시설물은 부령이 정하는 건물을 국토부 협의 후 축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사용허가 취소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과 별도로 어제 김석기 의원실에 가서 설명드리면서 위원 간 논의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김석기 의원실에서는 사용기간을 20년으로 연장, 철도 유희부지의 무상사용, 철도 운영 목적 미사용 철도공사 부지의 국가 반환 또는 재정 매입, 지자체 부지매각대금의 20년 분할납부 근거 등 총 4건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발의한 의원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다 됐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그런데 김석기 의원실에서 추가로 요청하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도읍 위원** 먼저 10조 7항입니까? 14페이지, 추가 쟁점사항 중에 철도 유희부지 34조 준용하는 것, 그래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지금 페이지를……

○**김도읍 위원** 14페이지, 비교표. 비교표를 보면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추가 쟁점사항 말씀하시는……

○**김도읍 위원** 예.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이 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일단은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석기 의원실에서도 국유재산법 개정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유재산법에서 그 조항이 신설된다면 저희 입장은 국유재산법 근거에 의해서 이 신설법에도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요. 지금 국유재산법이 사실상 상위법적 성격을 갖고 있지요, 국유 재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김도읍 위원** 그러면 차관님께서도 국유재산법이 개정된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도 반 대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19쪽, 이게 이 법안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데 국토부가 지금 폐철도 유희부지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차관님께서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지금 국토부가 관리하는 폐선로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 정도 수준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코레일은 소유자산에 대해서 종부세를 냅니다, 3.5%. 그러니까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 하면 민간이든 공공이든 사용을 하게 되면 3.5% 이상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부 소유면 같은 폐 선로, 폐철도라도 1%밖에 안 내는데 코레일 소유 같으면 종부세를 내야 된다는 이유만 으로 3.5% 이상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지자체가 폐역사를 임차한다 해도, 내부의 인테리어를 조금 한다든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손도 못 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십 년간 이 문제를 가지고 국토부도 해결을 못 하고 코레일도 해 결을 못 하고 지자체는 폐역사, 폐선로, 폐철도부지 여기에 대해서 골머리만 앓고 지역 특성에 맞게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뵈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건 차관님도 인정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일부는 인정을 하고요.

○**김도읍 위원** 물론 일부는 그렇지요, 일부는 활용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19페이지에 있는 이 조항, 폐철도부지에 대해서 국토부가 코레일을 상대로 반 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임의규정 이 정도는 넣어 두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 와 국토부와 코레일과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해법을 찾아 갈 수 있는 적어도 최소한의 길은 열어 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는 수십 년간 겪어 왔던 그 애로 사항을 앞 으로도 계속 겪어 가야 되고 또 이 문제가 끊임없이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차관님, 이 정도 임의규정에, 특히 운영의 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국토부가 찬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 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동의를 해 주시면 정부에서 좋은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도 록 길을 열어 주자. 안 그러면 수십 년간 있어 왔던 똑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 된다.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비생산적이고.

차관님께서도 표정을 봐니까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송기헌 의원님이나 민홍철 의원님이나 김석기 의원님 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만…… 특히 이 지역들은 좀 어려운 지역, 어떻게 보면 소멸지역, 소외된 지역들인데 지

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철도국장인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저희가 어제든 계속 재정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했는데 아직 재정부나 이런 데서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 하는 입장이고 또 철도 공사는 철도공사 부지 반환 시에 감자로 인한 부채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 측면만이 아니라 노조 측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라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철도공단을 통해서 4월 13일 두 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해서 과연 철도공사 부지 반환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 5월은 돼야 이 법률자문 검토 결과를 전달할 수 있겠다 하는 입장이어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석기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는 현재 송기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대안으로 해서, 김석기 의원님 안도 어느 정도 반영한 이 대안으로 먼저 통과를 하고 대신 저희 정부 쪽에서 5월에 지방정부 간담회를 통해서 각 지방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제도개선을 더 검토하고 또 어제 재정부도 아직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의를 하고 그리고 법률자문 결과까지 토대로 코레일 등과 더 협의를 해서 이걸 좀 신중하게 접근하되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어제 김석기 의원님께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재정부·철도공사 이런 데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과 또 법률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정부가 지방정부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일단 오늘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으로만 통과하고 이후 과정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강행규정으로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두고 그 구체적인 방법 또 가부 문제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부에서 국토부와 코레일과 재정 당국과 협의를 잘해서 가부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법,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하자.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하고 이걸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고 이렇게 조문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국장님. 그래도 안 돼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사실 저희가……

○**김도읍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재정 당국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걸 거치면 될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그런데 여전히 재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이게 어떤 법적으로 명시된 바 없는 사례인 데다가 법무법인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자문과 재정부 협의 그리고 또 지방정부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 사례까지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전제로 일단 정부 대안으로 먼저 통과시키고 이 부분은 접근을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사 사례가 없다는 그 지점을 강조하시는데 유사 사례가 없지요. 수십 년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해묵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유사 사례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특수하잖아요, 다른 국공유재산하고는. 다른 국공유재산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깐 해묵은 숙제고 그래서 특수성과 함께 이게 전례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거 아닌가요, 국장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위원님, 2차관입니다.

○**김도읍 위원** 예,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지금 말씀하신 폐철도부지의 반환이라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철도용지로 국가에서 사용하기로 해서 철도부지로 매입을 했는데—지목이 철도고—이게 폐철도화가 돼서 다시 철도부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을 받으면 이게 철도부지가 아니게 됩니다. 지목을 바꿔야 됩니다, 잡종지로 바꾸는 거. 그러면 국토부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재산은 재경부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유재산으로 해서 재경부로 넘어가고 재경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향후에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무상사용이라든지 협의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이걸 매입을 하려면 국토부에서 사용 목적이 있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유희지니까 매입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저희가 사용 목적 없이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도읍 위원** 그다음에 20쪽 추가 쟁점 사항 보시면 차관님, 이 부분은 국토부가 수용을 하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저희가 수용하는 것은 분할납부 규정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20년 분할납부.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20쪽에 있는 ‘철도 유희부지 매각에 관한 특례’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20년 분할납부는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수용을’만 얘기했어요. 수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분할납부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는 걸 전제로 이 법을 개정하겠다는 건은 차관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폐철도부지 반환 부분은 철도국장님하고 차관님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법리 검토하고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부분은 두 분이 공감을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김도읍 위원** 철도국장님, 공감을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예.

○**김도읍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빼고 저희들도, 김석기 의원실에서도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차관님, 지금 법안이 세 의원실에서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해법을 찾아 가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김도읍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법률 제명도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지요? 통합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명도 그렇고?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철도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특별법 제정안에 비해서 이번에 저희가 주요 사항을 뺀 국유재산 특례가 많지 않고 또 활용사업 계획과 활용사업 등 일반론적인 사업 관련 조항들을 이번에 넣은 점을 감안해서 저희는 일반법으로 제정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런 특례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네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특례는 아니고요. 국유재산법에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같이 담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례는 아니고요. 다른 타 법에 우선해서 저희가 특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김도읍 위원** 제명을 특별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한다?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철도국장님?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사실 무상사용이나 부지 반환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재산법에 대한 개정 부분이 먼저 선행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따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부지 반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정부 협의 또 법률자문, 지방정부 간담회 등을 통해서 향후에 만약에 그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정부 대안이 먼저 통과된 다음에 나중에 개정으로 가는 방안을 별도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제까지 사실 저희가 지침으로 했던 내용을 일단 법으로 바꾸는 게 이번에 가장 큰 부분이고 일부 특례 부분들을 포함한 수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법적 성격으로 봤을 때 일반법의 성격이 더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두 법안이 지금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들이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철도국장님, 대안으로 법률 제명을 어떻게 하기를 정부 쪽에서는 의견이 있습니까? 어차피 이게 논의가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복기왕** 예.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저희는 현재 ‘철도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폐철도가 아니고 철도?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철도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김도읍 위원** 철도 및 유희부지가 아니라 철도 유희부지?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예. 왜냐하면 철도 유희부지가 폐철도부지의 교량 하부, 지하선로 상부 전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거든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철도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하자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예,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염태영 위원 지난번 소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저는 지역구에서 단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의 민원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지역구가 중앙선·태백선·충북선의 교차 지역이다 보니까 동서남북이 다 철도고 또 10년 전에 중앙선·태백선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다 이전됐어요. 도심 안에 있는 폐철도부지가 엄청 많습니다. 시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경우 또 폐철도부지에 도로 개설하는 경우, 인근의 토지 소유주가 또 추가로 매입을 원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체가 없다 보니까 서로 미뤄요, 재경부는 재경부대로 또 코레일은 코레일대로. 그래서 모든 민원이 지자체로 몰려 오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든 간에 더 우선적으로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주면서 사용 허가를 해 주지요. 또 주민 복지 증진 업무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자체 의견에 따라 줘야겠지요. 여러 가지 어떤 사적인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체를 지자체에다 위임을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위임하면 거기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코레일 나름대로 재산상의 불이익은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효율적인 유희부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대폭 권한을 위임하고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매각하든 아니면 임대를 주든 빨리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철도 이설 부지 아직도 개발을 못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한테 입찰을 시켜 매각하든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서 이관하든 속도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우선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철도 유희부지에 대해서 지자체의 의견을 매년 듣습니다, 유희부지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유희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의사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임대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철도국장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국가 소유 및 철도공사 소유 폐철도부지에 대해서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5월 14일 날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개선안까지 더 강구하고 특히 관심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최대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염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궁금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12페이지에 김석기 의원님 안 중에서 소위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대부·사용허가 철회, 추가 쟁점사항에 정리돼 있는 10조 2항에 보면 ‘지자체에 대부·사용하게 한 철도 유희부지를 국가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회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철회하는 것은 국가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항인데 이것은 왜 정부에서는 반대를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20년, 그 위의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10년으로 이번에 조율을 한 것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넣겠다는 겁니까? ‘대부·사용허가 철회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은 법안에 넣겠……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그러니까 저희 대안 3항을 보시면……

○정점식 위원 3항 이것은 철회하고는 다른 거고, 대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소위 사용조건을 어겼을 때 등이고 철회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해서 철회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일단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시정 부분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정점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어느 부분 가지고 시정을 할 수…… 이게 1호부터 4호까지의 조건이 있을 때 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사용허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해서 다시 이걸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위 대부·허가를 철회하는 이 조항은 국가도 필요한 조항인데 왜 반대하느냐 이 뜻입니다. 지금 취소·시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호부터 4호까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실무자가 답하시든지.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제가 이 부분은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손명수 위원 아니, 아니……

○정점식 위원 아니,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손명수 위원 제가 좀……

○정점식 위원 예, 손 위원님.

○손명수 위원 의견을 그렇게 쉽게 바꾸고 그러시면 안 되지.

제가 볼 때는요 이 철회 조항을 넣는 것은 이 법 취지에 맞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이 법 취지가 지자체의 폐철도 유희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활용계획도 세우고 잘 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이것을 국가 대부해서 사용허가를 해 주고, 그런데 국가가 필요하다고 갑자기 이걸 철회해 버리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 이 법 취지와 오히려 맞지 않아요. 오히려 지자체가 이것 활용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은 받으시면 안 되고 좀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 이걸 지금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할 때 취소 조항으로 충분하고 철회 조항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 법 취지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김석기 의원실에서 이 조항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정점식 위원 방금 설명 들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손명수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넣으면 안 돼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철도국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년으로 할 때는 갑자기 5년을 20년으로 하니까 너무 길어져서 혹시 그사이엔 정부가 이 땅을 활용할 계획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철회 조항을 넣었는데 정부가 그동안 5년 단위로 할 때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고 또 10년까지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

방정부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철회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상당히 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철회’ 빼는 것에 대해서 김석기 의원님께서 동의하셨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만약에 굳이 넣으셔야 된다고 할 때 정부가 사실 그것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됐어요. 정리됐어요. 굳이……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쟁점이 됐던 부분들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아쉬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유희부지 매각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활성화를 시키자라는 의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재부의 세법이나 이러한 전체 질서에 막혀서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는 향후 국토부에서 지혜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실 내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정도가 저희들의 연구와 공부가 전부 다인 것 같은데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기재부와 협상을 해서 국토부가 먼저 이 법을 이렇게 바꿀 때 철도 유희부지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면서, 오늘 대안 이외에 맨 마지막 부분의 철도 유희부지 매각에 관한 특례 이 부분까지 대안으로 넣어서 최종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소위원장 복기왕 국토부, 문제없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유희부지로 있는 철도를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과 17항, 이상 2건의 폐철도 및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077)

1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636)

(10시53분)

○소위원장 복기왕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 이상 2건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도 일독을 했고 쟁점된 부분만 다시 확인해 주시고 대안 토론된 것 있으시면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소위 자료 36쪽에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과 관련하여……

○소위원장 복기왕 잠깐만요.

○전문위원 오세일 철도지하화 사업 비용 지원 주체에 국가를 포함할지 여부만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국토부에서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2차관입니다.

지난 4월 21일 소위 논의 시에 야당 위원이 국비 지원 관련 기획예산처 협의 요청에 대해서 이견 있었습니다. 김도읍 위원님하고 김희정 위원님께서 국비 지원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협의를 요청하셨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와 국장급 면담을 지난 4월 27일 진행했으나 추가 협의를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처, 재정 당국에서는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기획예산처하고 지속 협의는 하겠지만 이견이 없는 염태영 의원안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해 주시고 광규택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국비 지원 근거를 두느냐 안 두느냐 이것 하나인데요.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판단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차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입법 정책적 결정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업 편익이 해당 지자체에 집중된다’,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국토부 입장과 같은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무조건 저희 입장만 대변하는 건 아니고 또 재정 당국하고……

○김도읍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입장이 이것과 같은 거예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말씀드리기가 좀……

○김도읍 위원 아니, 차관님……

○김희정 위원 본인 의견이 없어요, 국토부 의견?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이 법의 입법 취지가 당초에도 국비 지원이 아닌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됐기 때문이에요 그 입법 취지에 맞춰서 저는 국비 지원보다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도읍 위원 예컨대 부산시민만이 이 철도를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철도로 인해서 그 지역 발전에 지장이 초래되고 부산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선로변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위원님 말에, 전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경부선 철도, 호남선 철도가 선로가 지나가는 그 지역만의 시설이 아니잖아요. 전국 교통기반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좁혀서 그 지역의 일로만 한정 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국비 지원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가 어렵고 그러한 사정은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철도를 이용해서 광주송정역 또 부산역

다 이렇게 교통편의를 보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만 광주시민, 부산시민만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 기반시설로 인해서 선로변에서 편익도 있지만 생활의 상당한 불편함 그다음에 지역발전 장애요인 이런 부분들 다 인정하잖아요, 차관님. 그 부분만큼은 인정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국비는 못 주겠다. 왜? 지역 편향이고 형평성,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논리를 개발하면 몰라도 이 논리는 국토부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저 철도국장인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읍 위원 예, 국장님.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4월 27일 날 약 한 시간 반 이상 경제예산심의관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도읍 위원 아니, 철도국장님, 재정 당국의 입장은 알겠다고요. 그런데 국토부마저도 이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제 이야기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실제 16개 사업, 이 지하화 사업을 하는 데 한 58조 원 되는데 20조 원이 부족해서 실제 이걸 지방정부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보셔서 지금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다는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걸 다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경제예산심의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둘이, 양쪽이 한번 머리를 맞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는 이 지하화 사업 예를 들어 이게 20조 원이 부족한데 지금 신규 철도 5차망 같은 거 내놓은 거를 다 얘기를 꺼내면서 SOC 사업 전체가 지금 예산이 복지나 다른 파트들이 쓸 돈이 많아서 많이 넣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그 외 비수혜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측면들도 얘기했지만 신규 철도 전반에 대한 문제 또 도로나 다른 SOC와 관련된 문제 등까지 언급하면서 기획예산처는 또 기획예산처대로 지금 SOC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요구가 많아서 힘들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계속 이걸 국회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니 우리가 귀 기울이고 앞으로도 계속 전달할 테니까 좀 더 고민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달을 그날 장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중요성은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다만 올해 5차망 수립 이런 여러 가지 SOC 부분이 도로·철도 각 부분에 있다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도 상당히 방어적인 입장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좀 더 이 부분은 논의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특히 저희는 16개 지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도 계속 지방정부가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와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계속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 편익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다,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거하고는 결을 달리하면서 일단 한정된 재정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겠다. 그렇지만 조

금 전에 철도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재정 당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그런데 아직까지는 재정 당국은 이 법 제정 당시에 이미 국비 지원 투입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지만 일단 비재정 사업으로 설계를 했고 또 지금 여전히 수익자부담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읍 위원** 수익자부담원칙 그런 건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차관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시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방재정으로는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힘들다, 공감을 하시고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차관님, 약속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제가 약속하더라도 이게 법률……

○**김도읍 위원** 아니, 국토부의 입장.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김도읍 위원** 아니, 법을 바꾸면 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그래서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데요. 이 법을 최초에 제정을 할 때 그런 비재정 사업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부산하고 대전하고 안산하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3개의 시범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진행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사정이 이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 필요성을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입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교통의 호시가 경부선이라든지 경인선이라든지 철도가 국가의 대동맥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지역발전도 됐던 건데 이게 노후화되고 도시화됐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지하화하고 재개발하는데 정부가 지역의 개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철저하게 손 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예를 들면 시범사업 지역은 아니지만 인천 같은 지역에는 동인천이 있습니다. 동인천역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철도역사가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로 철거가 되고 이것을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철도지하화 사업이 여야 할 것 없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하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화하고 복합적으로 하면 다 좋은데 적당한 예산이 없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계속 기다릴 수 없어 가지고 동인천역사를 먼저 철거합니다, 28년에. 그리고 다 다시 짓고 그 옆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복합 개발을 또 따로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차관님이 오셨는데 철도공단이라든지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이렇게 개발 주체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런 의견도 좀 받아 가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토부 입장이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차관님이 교통을 담당하시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이런 부지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주택공급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러면 주택공급은 지방사업이고 국가가 관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온 힘을 쏟아서 하는 게 주택공급의 그건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부산시의, 일부 지역에 한정된 일이라고 하시면 국가 예산을 투입할 데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김도읍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토부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정하고 이것은 균형발전과 노후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의견을 단단히 갖고 계시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셔야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들끼리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런 거는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노후 교통시설 개선이라든지 주택공급이라든지 종합적인 정부의 정책에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좀 정확한 입장을 정하시고 선도해 나가시고 그렇게 기획예산처를 설득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손명수 위원님.

○손명수 위원 질문 좀 하나, 지금 부산·안산 등에 3개 시범사업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손명수 위원 거기에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없습니다.

그 기본계획 할 때는 저희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본계획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은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손명수 위원 사업비는 없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한 10억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명수 위원 철도지하화 사업은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철도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도시 발전, 도시 확대에 따라서 처음에 철도가 건설될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를 단절시키고 또 소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철도지하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법을 저희가 만들었고 이번에 추가로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개정 내용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사실은 지자체가 왜 자꾸 중심이 돼야 하나면 토지이용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아주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통해서 소위 랜드 밸류(land value), 토지의 가치를 대폭 높이고 그 이익을 활용해서 지하화를 하자 이런 취지로 이 법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는 지자체 중심입니다.

그런데 국가도 당연히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 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현재는 지하화도 시급한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철도망 자체가 아직 더 구축해야 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국가 지원으로 이거를 했을 때는 실링이 다 있다 보니까 새로 철도를 당장 없어서 놓아야 되는 지역과, 자리에 안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윤종균 위원 같은 그런 지역, 철도가 없는 지역의 이익과 이미 철도는 있는데 이게 지상으로 다니다 보니까 도시 여러 가지 발전 저해 때문에 지하화가 시

급한 지역의 이익이 약간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런 철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그리고 우선순위, 그리고 이 법 자체가 소위 랜드 벨류 캡처(land value capture)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위원님들께도 잘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철도망이 확충되면 당연히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하화 사업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국토부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여러 가지 토지이용 계획 등을 통해서 토지 가치를 높여서 비용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게 지금 설계돼 있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손명수 위원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 인허가 의제라든가 또 사업 시행 주체를 좀 더 명확히 확대한다는 그런 개정안이 지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국가 지원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난번 소위 때부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우리도 분명히 의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SOC 사업 예산의 사정상 이러이러하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법 자체를 저는 오늘은 꼭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국가’를 빼더라도. 그러나 국가가 빠진다고 그래서 국가가 의지가 없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안이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안 들어가면 이 법안의 의미가 없는 건 꼭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김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정 위원 여러 위원들 말씀 저는 잘 경청했구요.

우선 손명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단 법을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노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 상당히 했기 때문에 마치 손을 던 것처럼 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부부처가 실링 안에서 고민하는 부분 저는 상당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다선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장관으로 가 있고 교통차관님이 현직 대통령님과 상당히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 오신 분이 앉아 계시면 이럴 때 실링 늘려 올 생각 안 하고 무슨 안에 있는 실링 안에서 이거 쪼개기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소위 힘 있는 장차관이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저기 힘 있는 장차관 보내는 건데.

두 번째는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시대에는 소위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대열에 가는 순간은 국가의 개발 개념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일정 비율이 투입이 돼야 되고 앞에 만들었던 것을 유지·보수·수정·관리·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비율을 점점 늘려 가는 게 이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전체 국가 틀을 만드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비전은 없이 이렇게 온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간절하게 이거를 원하는 상황에서 재정 당국을 만나는 것과 그냥 국회에 국토부만 반대하기는 힘드니 재정 당국을 끌어들여서 반대 논리를 만들어 오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국토교통부 의견을 보면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철도지하화 사업 편익이 지자체에 집중되므로 수익자부담원칙상 지자체가 사업비 수요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니, 국토부 의견이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대놓고 반대하는 거지. 우리한테 이 정도 보고할 거면 무슨 재정 당국에 가서 국토교통부의 절실한 마음이 전달이 됐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자꾸 철도지하화 사업을 하면 편익이 지자체에 집중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지상에 철도가 놓여 있어서 손해는 국가 전체가 봤습니까, 해당 지역이 봤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손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소음이라든지 또 지역 간의 철도로 인한 단절 그런 거를 손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희정 위원 제가 그렇게 하는 거고 차관님은 소음이나 양 마을 간의 단절 같은 것을 손해로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아닙니다. 손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거꾸로 최초에 철도가 생김으로써 그 지역이 발전되는 그런 이익도 있고요.

지금 철도지하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김희정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새로운 편익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손해를 복원하는 차원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반대를 하고 반박한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요.

○김희정 위원 그러면 문서에 그게 있어야지요. 기존의 손해가 복원이 되고 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예산안에서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과 지자체에 집중되므로 수익자 부담상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거다라고 페이지를 내는 것과 입장이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표현이 좀……

○김희정 위원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가 잘못됐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앞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부분 관련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의견 수렴해 오라고 했더니 의견 수렴 안 해 놓고선 의견 수렴했다라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자기들이 통과시키고 싶을 때는 반대의견 묵살하고 업계 의견 묵살하고 오고, 자기들이 하기 싫은 게 있을 때는 재정 당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기본적인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면 돈이 생긴들 이 원칙은 변하는 원칙입니까?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혹시 철도국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복기왕 잠깐만요.

김희정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다만 재정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보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취하기에 옳지 않은 모습처럼 보인다는 지적에서도 저는 향후에 이런 재정 문제 때문에 가로막힌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을 다 떠안는 듯한 이런 모습은 피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김희정 위원 철도국장님한테만 맡겨 놓지 말고 실세 차관님 직접 뛰세요.

○소위원장 복기왕 김희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다만 우리가 정부 운영을 해 보면서 어쨌든지 간에 집안이든 나라든 지자체든 살림살이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문제가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할 거냐 말 거냐라는 판단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상 철도지하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또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이번에 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2단계 법 개정 조항의 과제로 삼고 오늘은 1단계로 현재 나와 있는 수정안을 대안으로 해서 우선 법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잠시만요. 간단하게 한말씀만……

차관님, 지하화하는 데 국비가 필요하다는 논거를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형평의 문제가 아니다, 또 수익자 부담도……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경부선이 부산 초입에 들어가면서, 대구도 마찬가지로 지역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선로 주변에 있는 주택가들 혹시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김도읍 위원 그거는 조금 전에 김희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손해가 맞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국토부 입장을 견고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옥 위원 저도 1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예.

○윤재옥 위원 대통령 공약사항에 수도권 도심에 철도지하화하겠다는 공약 있지요? 대통령이 공약했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윤재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가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지금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되는 계획은 없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면 이건 희망고문이지. 지방자치단체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데…… 우리 정치인들이 선거 때 되면 공약 다 하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저희가 당장 그게 착공을……

○윤재옥 위원 대통령 공약사항은 특별 관리하잖아요. 부처별로 다 어떻게 하겠다는 실천계획도 세우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철도 지하화하겠

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그래서 저희가 16개 사업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부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재옥 위원 그러면 거기도 아마 점점한다 한들 국비 지원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철도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안산·부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부분을 저희가 국비 10억씩을 지원해서 해 주고 있고……

○윤재옥 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철도국장 김태병 또 MOU도 맺고 다양한 지원 사항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국토부 하는 일 중에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할 수 없는 SOC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공항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혼잡도로 해 가지고 쥐꼬리만큼 공사비만 반 대 주니까 부지매입비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라 이런 이야기지요. 국가예산을 전체적으로 배분할 때 SOC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기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란 말이에요, 노력해서. 그 얘기 한번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10초만 얘기할게요, 10초만.

○소위원장 복기왕 예.

○배준영 위원 항만이랑 철도랑 뭐가 다른니까? 똑같이 교통이고 화물이고 다 나르는데. 항만 재개발에 관련된 정부입법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

○배준영 위원 해양수산부는 하는데 국토부는 왜 못 합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요. 이 판단만 내려 주십시오. 우선은 국비 지원 조항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의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태영 위원 실세 차관 믿고 의결합시다.

○소위원장 복기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김희정 위원 ‘지원할 수 있다’ 넣어서?

○소위원장 복기왕 아니,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 이상 2건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4건의 안건이 더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왜 마치는데요?

○**배준영 위원** 아니, 이거 좀 심의를 해 주세요.

○**소위원장 복기왕** 그러고 싶은데요 지금 의결정족수가 구성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김희정 위원** 아니, 여당 위원님 혼자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당은 왜 위원님들이 이리 안 오노?

○**소위원장 복기왕** 제가 당 대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배준영 위원** 일단 심의만 좀 하시면 어떨까요?

○**김희정 위원** 아니, 솔직히 카메라 나오는 데는 다 와서 앉아 있고 여기 카메라 안 나오는 소위에는 안 앉아 있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당 위원님들?

○**손명수 위원** 일당백이 와 있잖아요, 일당백이.

○**김도읍 위원** 누가 안 앉아 있는데? 여당이 어딘데? 민주당인가?

○**김희정 위원** 민주당. 민주당이 그렇다고요.

○**배준영 위원** 이 법 잠깐만 심의만 해 주세요. 5분만 할게요.

○**김희정 위원** 해 주세요.

○**김도읍 위원** 몇 번?

○**배준영 위원** 마지막 건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장 복기왕** 어차피 오늘 의결 못 한 것은 다음번 소위가 구성되고 나면 다시 일독하고 다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굳이……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을 한번 남기시고 그러고 나서……

○**손명수 위원**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하시지요.

○**김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소위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소위원장 복기왕** 상반기 소위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려야지요.

○**소위원장 복기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배준영 위원** 약간 질의응답도 잠깐 할게요,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장 복기왕** 예, 그러시지요.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잘 아실 텐데 얼마 전에 공항지역에서 심장지로 장시간 이동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공항지역에 병원을 만들기로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공항공사하고 국토부에서는 TF에 참여하기로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 복지부장관님이 TF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공항지역의 대규모 재난사고라든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지난번 장관님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도 하고 그러면서 TF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에서 TF 관련해서 협의요청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아직 협의해야 할 부서를 제대로 정하지를 못해

가지고 협의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쪽은 저희가 해결할 테니까 국토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간 위원님께서도 별도로 발의하신 의료법에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면 공항공사도 좀 더 전향적으로 진행을 하고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일단 의료법에 먼저 근거를……

○배준영 위원 아까도 기획예산처 얘기하시고 다른 데로 다 돌리시는데 국토교통부의 의지를 묻는 거예요.

TF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TF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손명수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김희정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도읍 김희정 배준영 복기왕 손명수 엄태영 윤재옥 윤종오 이연희 정점식

○청가 위원(3인)

윤종균 천준호 한준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관

전문위원 오세일

입법심의원관 이유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홍지선

교통물류실장 박재순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박준형

철도국장 김대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장순재